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및 발의일자 : 김정엽 의원 등 5명(2026. 09. 01.)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09월 01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34회 포항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-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(2026. 10. 16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정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관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환을 위하여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색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❍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
❍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❍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제안근거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명권)

❍ 본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환을 위해 실종자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수색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고, 원활한 수색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❍ 주요 내용으로

➢ **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**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➢ **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**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➢ **안 제5조에서**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➢ **안 제6조에서**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❍ 관련법령을 살펴보면,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종합검토 결과,

현재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민간 수색대원들은 장시간 수색 활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공간이나 음료·간식 등 기본적인 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활동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. 본 조례안은 이러한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색대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민간 수색대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,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❍ 다만, 안 제2조의 “실종자” 및 “수색대원”의 정의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 특히 실종신고가 관계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

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관계기관의 별도 요청 없이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조례의 지원 대상이 불명확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❍ 또한,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는 실종자 수색 활동 전반에 대한 시장의 책임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, 시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「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❍ 조례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.

2. 수정사항

❍ **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- 제2조제1호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으로서,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람을”로 하고,
- 같은 조 제2호 중 “이란”을 “이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협조에 따라”로, “개인 또는 단체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한다.
- 제3조 중 “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하여 실종자 수색 활동을 지원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”을 “발견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“실종자”란 포항시 내에서 약취·유인·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.	1. ---------- 사람으로서,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람을 ---.
2. “수색대원”(민간인에 한함)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(이하 “수색 활동”이라 한다)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	2. ----------이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협조에 따라 ---------- 사람을 ----------.
제3조(시장의 책무) 포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하여 실종자 수색 활동을 지원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----- 발견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----------.